

FAQs: How to Receive Your Paycheck If You've Been Detained or Deported

자주 묻는 질문: 구금 또는 추방된 경우 급여 수령 방법

해당 자료들은 ICE에 의해 구금되거나 추방될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캘리포니아의 근로자면 추가적인 주 법률이 적용되며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 사무소 (**California Labor Commissioner's Office**)에서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무료 법률 자문을 원하시면 **Asian Law Caucus**에 **415-896-1701**로 연락 주십시오.

1. 구금되거나 추방 위험이 있을 경우, 마지막 급여를 받기 위해 미리 무엇을 준비 할 수 있나요?

마지막 급여를 받기 위해 지금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첫째, 상사나 고용주에게 다른 사람이 대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문의하세요 (제3자 급여 수령, **third-party paycheck pick up**, 이라고도 함). 예를 들어, 고용주가 공증된 위임장이 요구되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고용주가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준비해 놓으세요. 따로 특별한 정책이 없다면, 비상시 본인이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고용주에게 미리 수령인을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의 필요한 서류와 연락처 등을 고용주에게 제공하세요. 또한 원한다면, 고용주에게 마지막 급여를 우편으로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고 주소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관련 요청들은 모두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부분에 고용주에게 제출할 수 있는 서식의 예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통지서는 급여 수표를 우편으로 발송해 달라는 요청이며, 두 번째 통지서는 위임 받는 사람이 수표를 받으러 올 것임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대리 위임장을 지역 내 비영리단체의 도움을 받아 대리 위임장 (**Power of Attorney**)를 준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리 위임장 작성 시 귀하가 부재중일 때 누군가에게 재정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를 대신하여 마지막 급여 수령을 돕는 데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 위임장의 대상자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구금되거나 추방된 경우 마지막 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구금되거나 추방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고용주에게 연락하십시오. 구금 또는 추방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리고 마지막 급여 지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주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급여 수령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대신 요청하십시오.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경우 고용주는 귀하를 대신해 급여를 받을 사람을 지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문서 뒷부분에 있는 서식을 활용하여 고용주가 마지막 급여를 위임 받을 사람에게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수령을 통해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급여는 노동위원회로 발송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급여 수표를 노동위원회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연락처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구금되거나 추방된 경우 마지막 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에서 고용주가 마지막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가 퇴사하거나 나가는 직원에게 임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 종료 후 72시간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주가 해고하면 경우에는 당일 지급해야 합니다.

구금 중에 고용주가 귀하의 직위를 유지하는 경우, 고용주는 귀하가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캘리포니아 법이 결정한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 지연 벌금”을 귀하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구 제기 관련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지연 벌금을 받아내기 위한 청구 제기 기한은 3년입니다.

4. 만약 고용주가 마지막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주는 법적으로 귀하가 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귀하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은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구서 제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 지연 벌금을 받아내기 위한 청구 제기 기한은 3년입니다.

5. 독립 계약자/ 개인 프리랜서인 경우 마지막 정산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의: 독립 계약자/ 개인 프리랜서면 주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십시오. 이 경우 계약서상의 지급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독립 계약자/ 개인 프리랜서”로 통보 받았으나, 캘리포니아주 법률상 실제로는 직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를 “Misclassification” (부적절한 분류)라고 합니다. 부적절한 분류는 고용주가 주 고용법 준수를 회피하기 위해 직원을 독립 계약자/ 개인 프리랜서로 취급할 때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용인이 귀하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행사할 경우 부적절한 분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하게 분류되었다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연락하여 임금 청구 제기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데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구서 제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 지연 벌금을 받아내기 위한 청구 제기 기한은 3년입니다.

6. 추방당했을 경우 급여 수표를 어떻게 현금화할 수 있나요?

미국 밖에서 수표를 현금화해야 하는 경우, 미국 내 은행 계좌에 접속할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미국 수표를 취급하는 은행을 찾거나 수표 현금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수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대신 현금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를 “third-party checks”(제3자 수표)라고 합니다. 사전에 은행에서 제3자 수표를 수락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페이지](#)의 “International Check Cashing Brochure”(국제 수표 현금화 안내 자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Sample Letter #1

샘플 편지 #1

For Requesting Mailing of Final Wages

마지막 급여 지급을 요청하기 위한 우편 발송 절차

[Date]

[날짜]

[Employer Name
Employer Address
City, State, Zip code]

[고용주 이름
고용주 주소
도시, 주, 우편번호]

Re: Final Paycheck for [Worker's Name], [Employee ID, if applicable]

[근로자 이름], [해당 시 직원 ID]의 최종 급여 지급

Dear [Employer],

[고용주]님께,

Please deliver all the remaining wages that I am owed to:

저에게 지급되지 않은 잔여 임금 전액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Worker's Name]
Care of [Name of Person Authorized to Receive Your Check]
Address
City, State, Zip Code]

[근로자 이름]
[수표 수령 권한자 이름] 귀하
주소
도시, 주, 우편번호

Please note that in California, if an employee is discharged or resigns, all wages owed must be paid promptly or the employee may be due penalties. (Lab. Code § 203.)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사직할 경우, 미지급 임금은 즉시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b. Code § 203.)

If there needs to be further coordination regarding my final paycheck, please contact [Name of Authorized Person and Contact Information].

마지막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수령 권한자 이름 및 연락처]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your assistance.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incerely,

[Worker's Signature]

[Printed Worker Name]

[근로자 서명]

[근로자 이름]

Sample Letter #2

샘플 편지 #2

For Requesting In-Person Pick-Up of Final Wages

마지막 급여 직접 수령 요청

[Date]

[날짜]

[Employer Name
Employer Address
City, State, Zip code]

[고용주 이름
고용주 주소
도시, 주, 우편번호]

Re: Final Paycheck for [Worker's Name], [Employee ID, if applicable]

[근로자 이름], [해당 시 직원 ID]의 최종 급여 지급

Dear [Employer],

[고용주]님께,

I am authorizing [Name of Person Authorized to Pick Up Your Check] to pick up my paycheck in person at my regular place of work during normal working hours.

본인은 [수표 수령 권한자 이름]이 정상 근무 시간 중 본인의 근무지에서 직접 급여 수표를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Please note that in California, if an employee is discharged or resigns, all wages owed must be paid promptly or the employee may be due penalties. (Lab. Code § 203.)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사직할 경우, 미지급 임금은 즉시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b. Code § 203.)

If there needs to be further coordination for the pick up of my final paycheck, please contact [Name of Authorized Person and Contact Information].

마지막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수령 권한자 이름 및 연락처]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your assistance.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incerely,

[Worker's Signature]

[Printed Worker Name]

[근로자 서명]

[근로자 이름]